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10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이달희·엄태영·고동진

인요한 • 유영하 • 서범수

김상훈 · 최보윤 · 김장겸

배준영 · 김종양 의원

(11인)

제안이유

주민주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전신으로 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임.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4년 1,003억 원에서 2023년 3,090억 원으로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또한 같은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음.

마을기업은 지역 고용 창출, 숨겨진 자원의 발굴・활용, 지역사회에

마을기업의 이익 환원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순기능을 실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마을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마을기업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근거 규정의 부재로 지원정 책 수립·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지 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이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시·

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시·도에 각각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와 시·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의 구성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 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함(안 제13조).
-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 아.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제17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을"이란 시·군·자치구의 구역 내에서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고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 2.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마을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마을주민 및 마을기업의 역할과 책무) ① 마을주민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구성·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노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 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실태조사 · 분석
 - 5.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과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 립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시 · 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 3. 시·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 4. 시·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5. 시 · 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 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 별 시행계획 및 시·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 1. 마을기업 육성 ·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 3.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제18조에 따른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원 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 ·도에 시·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기업 지정 및 육성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세제·재 정 등의 지원을 받는 기업·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마을주민이 대표자 및 구성원일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수·출자비율·특수관계인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 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 4. 대표자 및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 5. 지역의 소득·일자리 창출 기여, 지역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절차·기준·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 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마을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3. 시설비 · 부지구입 등의 지원 · 융자
- 4.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 5. 마을기업의 생산제품 ·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
- 7.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마 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 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 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보고서의 제출) 마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

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제13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 부·방해·기피한 경우
- 6.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그 밖에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 제15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시·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① 시·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 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 2. 마을기업의 성과 평가 및 사업보고서 검토
 -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 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 · 운영 지원
 - 6. 마을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 ③ 시·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설치·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도·감독하며, 제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검사를 한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마을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마을기업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 2.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 3.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 제3조(마을기업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이법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